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9. 9. 14.
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9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'99. 9. 14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민원봉사과장 성 학

가. 개정이유

정부의 규제정비 시책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모법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 관련조항중 제6조(사전징수)내용중 일부 "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"를 호적법시행규칙에 배치되어 삭제코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.
-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

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사전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조례 제6조 후단에 규정된 “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된 사전징수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동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채재선 위원) : 호적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?
- 답변요지(성 학 민원봉사과장) : 출생, 사망, 혼인, 이혼 등의 신고를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정부의 규제정비 시책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모법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 관련 조항중 제6조(사전징수) 내용중 일부 “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”를 호적법시행규칙에 배치되어 삭제코자 함.

3. 개정근거

가. 호적법(1998.6.3 법률 제5545호) 제132조의2

나. 호적법시행규칙(1999.1.18 대법원규칙 제1582호) 제52조제3항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자진납부)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을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사전징수)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자진납부)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을 수 있다.</p>